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9. 1. 15.

제안자 : 이종호 의원 외

### 수정이유

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제1항부터 제2조 제3항에서 『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』, 『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』, 『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』의 충청북도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, 본 조례안과 상호연관성이 없고 개정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본 개정조례안 부칙2조를 삭제하고자 함.

### 수정주요내용

1. 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삭제함.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b></p> <p>① 『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』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3항 중 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을 “산업정보평생과장”으로 “교육정보화과장, 기획관리과장”을 “학교정책과장, 행정예산과장”으로 “충청북도 사회복지과장, 여성정책관”을 “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여성가족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2항 중 “평생교육체육과”를 “산업정보평생과”로 한다.</p> <p>② 『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4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과장”을 “행정예산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③ 『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 획심의위원회 조례』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과장”을 “행정예산과장”으로 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